

美國의 學部教育 및 專門教育—專門法學教育을 중심으로

崔 大 權*

1.

한국대학에서와는 달리 미국대학에서는 法學, 醫學, 經營學, 圖書館學 등과 같은 여러 과목들은 專門(professional)科目이라고 하여 대체로 大學院 段階에서 가르치는 과목으로 되어 있다. 그러한 만큼 우리의 학문적 호기심은 자연적으로 “專門(professional)”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전문교육은 하필이면 왜 대학원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가 혹은 학부 단계에서 전문교육을 시킨다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전문대학(원)을 미국에서는 대체로 professional school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專門大學(院)의 학생들이 학부교육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자질을 지니게 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등학교 졸업에 이어 곧 바로 전문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하는 경우에 이러한 학부 단계의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또는 어떠한 자질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인가, 대학에서의 전문교육이란 한편으로는 대학에서의 非專門科目인 다른 專攻(예컨대 정치학, 심리학, 물리학, 공학 등) 教育 및 訓練과는 어떻게 차별화 되며 다른 한편으로 職業(vocation, trade) 教育·訓練과는 어떻게 차별화 되는가와 같은 일련의 질문에 이르게 된다. 나아가 우리의 호기심은 잠시후에 살펴보려고 하는 바와 같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미국사람들의 결론 내지 해답들이 대학의 조직·운영에 관련된 미국인 전형의 사고방식의 반영일 뿐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배워야 할 만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까지 이른다.

이곳에서 우리가 위에서 제기한 질문들 모두에 대하여 빠짐없이 대답을 행하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大學教育, 특히 學部教育 및 專門(大學院)教育, 그 중에서도 法學教育, 그리고 상이한 두 段階에서의 教育 사이의 連繫 문제와 관련한 미국인들의 思考方式을 서술하여 보려는 소박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기하고 싶은 당면한 질문들은 법학교육을 위하여 학부교육이 왜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는 것인가, 전형적인 미국 學部教育의 性格 및 特徵은 무엇인가, 專門(大學院)教育으로서의 미국 法學教育의 性格 및 特徵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일 수밖에 없다. 법학교수로서 필자는 법학 이외의 미국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의 전문교육 전반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기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지난(1995) 여름 미국 몇도시에 2주간의 연구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그리하여 대학인증(accreditation) 기관의 담당직원, 대학의 교무처장, 학장, 교수, 그리고 관리직 직원들에 대한 면접을 행하였다. 우리가 방문하여 면접을 행하였던 대학인증기관은 Chicago에 소재하고 있는 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Commission o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이었으며,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으로 방문하여 면접을 행하였던 대학으로는 Chicago의 North Western University, Loyola University 및 Roosevelt University, New York의 New York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and University Center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Newark의 Rutgers University, Princeton, Yale, 그리고 Boston지역의 Harvard, Northeastern University 및 Bunker Hill Community College, 그리고 Berkeley의 University of California 등이 포함된다. 이 면접방문을 행하는 과정에서, 읽고 점검자료로 쓸 수 있는 상당한 량의 문헌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가 행한 관찰, 문헌자료로부터 얻은 지식,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대학원 학생으로서 그 후에는 방문교수의 자격에서 직접 겪었던 체험이나 관찰들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2.

美國 法學教育을 特徵짓는 要素를 들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음 4가지 점을 가장 特徵的인 要素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¹⁾

(1) 첫째로 미국의 법학교육은 大學에서의 연구·교육 과정의 하나로 행하여지고 있다

(1) 美國의 法學教育에 관한 文獻은 부지기수이나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崔大權, 英美法, 개정중보판(서울: 博英社, 1991), 156-181면; William P. LaPiana, *Logic and Experience: The Origin of Modern American Legal Education*(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Robert Stevens, *Law School: Legal Education in America from the 1850s to the 1980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3); 법학교육 특집으로 낸 *Wake Forest Law Review*, vol.30, No.2(1995) 전권; Amy M. Colton, "Eyes to the Future, Yet Remembering the Past; Reconciling Tradition with the Future of Legal Education," *University of Michigan Journal of Law Reform*, vol.27, Nos.3-4(1994), 963-989면; *Legal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An Educational Continuum, Report of the Task Force on Law Schools and the Profession: Narrowing the Gap*(Chicago: American Bar Association, 1992); Robert MacCrate, ed., *Legal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An Educational Continuum, The Profession for Which Lawyers Must Prepare*, student edition (Chicago: ABA, 1992); Richard L. Abel, *American Lawyer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특히 48-71면; Lawrence M. Friedman, *A History of American Law*(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3), 특히 525-566면; Richard L. Abel, "United States: Contradictions of Professionalism," in Richard L. Abel and Philip S.C. Lewis, ed., *Lawyers in Society*, 186-243면 등.

는 점이다.

(2) 둘째로 미국의 법학교육은 大學院 段階의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3) 셋째로 미국의 법학교육은 專門教育 과정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이다.

(4) 넷째로 미국의 법학교육은 事例中心의 教育方法(case method)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王朝時代에는 法(學)은 양반출신 학자들이 배우기에 적당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한 이데면 낮은 학문적 주제였었다. 法廷이 구성되는 경우에 양반출신 학자들이 고을 원님이나 관찰사로서 재판관이 되면서도 말이다. 법(학)은 증인계급이 배워서 법전문 하급관리가 되는데 필요한 주제였을 뿐이다. 그러나 유럽 大陸에서는 일찍부터 법(학)이 大學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중요한 學問的 主題였다.

그런데 英美法界에서는 역사적으로 (Blackstone의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를 비롯한 소위 權威法書를 읽어서 學習하는 것과 함께 행하는) 徒弟制度가 적어도 영국에서는⁽²⁾ 1753년에 Oxford에서 Blackstone이 보통법을 가르치기 시작하기까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1829년에 학장이자 대법관이었던 Joseph Story가 Harvard대학의 한 과정으로서 Harvard Law School을 세우기에 이르기까지(Harvard Law School 그 자체는 이보다 12년전에 세워졌다) 그 기본이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런데 중세 영국대학에서 로마법은 인문교육의 일환으로 가르쳤지만 보통법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흥미롭다. 아무튼 위 시점으로부터도 수십년을 더 지나서야 法學教育(보통법 교육)이 大學의 正規課程의 하나로 확립되기에 이른다. 사실 4년의 學部教育에 이어 3년의 法學教育이 행하여지는 미국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미국전역에 걸쳐 기본틀이 되기에 이른 것은 100년도 되지 아니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영미법계의 도제제도를 통한 법학교육의 긴 역사를 감안할 때 법학교육(및 법학연구)이 대학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대단한 성과라고 믿는다.

법(학)이란 하나의 技術(art 혹은 trade)인가 학술적으로 추구할만한 學問 또는 科學인가? 이 질문은 법학교육의 성격에 관하여 많은 함의(implications)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우선 법학을 대학과정의 하나로 편성함으로써 법학은 대단히 중요한 학문적 추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법학연구에 있어서도 인접 다른 학문의 최근의 성과를 수용하기 마련이며 역으로 인접의 다른 학문의 연구도 법의 변화나 법학의 연구성으로

(2) 英國의 法學教育에 관하여 전계 崔大權, 英美法, 122-156면; Richard L. Abel, *The Legal Profession in England and Wales*(Oxford: Balckwell, 1988), 특히 261-281면; S. H. Baily and M. J. Gunn, *Smith & Bailey on The Modern English Legal System*, 2nd., (London: Sweet & Maxwell, 1991), 113-179면; P. B. H. Birks, ed., *Reviewing Legal Education*(Oxford University Press, 1994); *Reviewing of Legal Education*, Consultation Paper, The Lord Chancellor's Advisory Committee on Legal Education and Conduct, Initial Stage, June 1994; *Reviewing of Legal Education*, Second Consultative Conference, The Lord Chancellor's Advisory Committee on Legal Education and Conduct, July 1994; *Annual Report for 1991-1992*, The Lord Chancellor's Advisory Committee on Legal Education and Conduct (London: HMSO, 1992) 등.

부터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이 대학을 떠나서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라도 법학이 대학과정의 일부로 편입됨으로써 더욱 촉진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법에 관련된 주제에 있어서의 학제간 연구는 특히 대학을 통하여 오늘날 학문활동의 불가결한 한 부분이 되고 있다. 科學的인 法學研究 및 知的 努力을 통하여 법, 법학자들 그리고 법실무가들은 미국사회의 社會變化와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미국사회에 있어서 법이란 사회변화에 항상 뒤쳐지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지난 여름 면담차 미국법학교수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면 내가 제기하였던 한결같은 질문은 미국에서는 왜 대학원 단계의 법학교육을 시행하는가 하는 것이었으며 이 질문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학원 단계에서 시행하는 법학교육을 어떻게 正當化할 수 있는가? 법과대학 입학자격요건으로 학부교육의 수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부교육을 마친 학생이 법과대학생이 되었을 때 학부교육을 통하여 무엇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가? 법과대학생이 학부과정 졸업생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 현재 수준의 법학교육의 目標나 質을 갖추 수 없다는 것인가? 法學教育은 학부 단계에서는 不可能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現在 水準의 法學教育이 不可能하다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내가 얻은 답변들은 거의 차이없이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첫째는 傳統 즉, 달리 이유를 달 것도 없이 이제껏 그리 해왔다는 것이다. 둘째로 학부과정 졸업생들은 특히 分析力, 創意力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成熟度(maturity)의 점에 있어서 專門的인 法學教育을 받을 수 있는 能力이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단연 優越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주장으로 이루어진 이 답변들은 내게는 지나치게 틀에 박힌 미국식 답변으로 들렸으며 미국식 법학교육 아이디어에 대하여 과학적 정당성을 찾아 보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특히 자기 나라에 미국식 법과대학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말할 것도 없이, 전통에서 답을 찾는 경우에는 더욱이나 그러하였다. 하필이면 왜 4년+3년으로 이루어진 학제여야 하는가? 학부 단계의 법학교육은 왜 안된다는 것인가? 그러면 그 전통은 어찌하여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과정에서 辯護士市場의 壁을 높이 쌓으려는 변호사의 職業利益이 개재되어 있었다는 점이 자주 언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문헌을 보면 3년의 법학교육과정 및 학부과정의 졸업이라고 함과 같은 학력요건의 강화는 원래 유태인을 비롯한 새로 이민온 사람들이 사회에서 대우받는 高邁한 專門職種(learned profession)에 쉽게 들어오는 것을 牽制하려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었다⁽³⁾고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변호사시장을 지키려는 생각을 미국에서는 학력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이루려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학력요건이 아니라 사법시험 합격의 문을 굳게 닫음으로써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점은

(3) 전계 LaPiana, *Logic and Experience*, 86면; 전계 Stevens, *Law School*, 92-111면, 특히 99-100면; 전계 Friedman, *A History of American Law*, 550면 및 553면 등.

비교법적으로 참으로 흥미롭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미국 법학교수이면 누구나 현재의 7년제(4년+3년) 학제를 옹호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7년제 학제 대신 5년제(2년+3년) 학제로의 개혁을 신봉하는 법학교수도 한두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나로서는 놀라움이라 할 수 밖에 없었다.⁽⁴⁾ 이들 교수의 생각으로는 2년간의 인문교육이면 현재의 3년간의 전문법학교육을 받기에 충분할 뿐더러 이렇게 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교육 비용을 상당히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7년이 걸리게 되어 있는 현재의 법학교육제도에 대하여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根據 내지 理由를 든다면 위의 두 번째 답변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7년제의 존재 이유 내지 근거는 4년의 학부교육 및 3년의 법학교육 양자의 성격과 質에 크게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미국 학부교육의 성격은 어떠한 것이란 말인가? 미국 학부교육의 성격에 관하여 들을 수 있는 한결같은 대답은 그것이 인문·과학교육(liberal arts and science)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를 紳士(gentlemen) 내지 民主社會의 市民으로 훈련시키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교육의 특징적인 성격이란 학생들에게 創意力과 分析的·批判的 思考力을 길러주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역사학, 철학, 문학, 언어, 작문, 수학 및 과학과 같은 학과목의 이수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학부학생들로 하여금 보통은 학부 2학년을 끝낸 시점에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그 보다 더 뒤의 시점에서, 자기의 전공을 결정하게 한다.

그렇다면 인문·과학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부교육이 전문가 양성교육에 대립된다고 할까 어쨌든 이와 대조가 되는 개념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만큼 미국의 학부교육이란 젊은이들을 자유스러운, 창의력을 지닌, 그리고 분석력·비판능력을 갖춘 일반교양인(educated generalists)으로 교육토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지 전문가로 교육토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문교육은 그같은 인문·과학교육 중심의 학부교육 후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문·과학교육 중심의 학부교육의 혜택 없이 행하여지는 전문교육이란, 이를테면 고등학교졸업에 이어서 곧 바로 행하여지는 전문교육이란, 기술자(법률기술자, 잡술가·pettifoggers, 사건변호사 등)는 양성해 내겠지만 고매한 전문가(learned profession)는 양성해내지 못한다는 假定이 거기에 前提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는가와 같은 일련의 질문들을 또한 동반하고 있다. 어쨌든 그 가정에는 일단의 진리가 들어 있다고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4년간의 학부교육에 이은 3년간의 법학교육이라는 미국의 공식이 아마도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리라. 한국의 법학교수

(4) UC, Berkeley 법과대학의 Phillip E. Johnson교수가 이러한 생각을 토로한 미국 법과대학 교수 가운데 하나였다.

및 실무법률가 가운데서도 바로 이러한 점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위의 假定이 타당하냐의 여부는 高等學校教育의 性格에도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制度的으로 獨逸의 法學教育⁽⁵⁾의 모형은 學部에서의 그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고등학교 교육, 특히 그들의 Gymnasium의 교육이 美國 大學 學部과정의 人文·科學教育에, 적어도 미국 대학 학부과정의 低學年教育에 상당하다고 할까 그것에 비견할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만큼 독일 모형은 미국 모형의 부적실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모형의 적실성을 보여주는 비교제도론적 증거로서 거론되어야 마땅하리라 생각된다. 동시에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도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위하여 4년간의 학부교육의 이수를 반드시 요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법학교육은 필요 이상의 시간과 금전을 소요케 한다고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아니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 의학교육의 일반적 모형인 4년의 학부교육에 이은 4년의 의학교육 과정과는 달리 6년간의 醫學教育 課程(2년간의 의예과 이수에 이은 4년간의 의학과정)을 가지고 있는 醫科大學이 또한 있다는 사실은 흥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한편 법학교육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5년제 法學教育課程(2년의 예과과정에 이은 3년의 법학과정)을 강력히 지지하는 목소리가 한국에도 존재한다. 現在 한국 대학의 法學教育의 모형은 4년의 학부과정의 그것이며 그곳에서 행하여지는 법학교육은 그 성격이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기보다는 人文教育의 그것(敎養 法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醫學教育의 일반적 모형은 6년의 그것(2년간의 예과에 이은 4년의 의학과정)이다.

미국 학부교육의 모형이 일반적으로 인문·과학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⁶⁾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소위 아이비 리그(Ivy League)대학을 위시하여 미국의 전국적, 국제적으로 잘

- (5) 獨逸의 法學教育에 관한 문헌으로 李時佑, “獨逸에서의 法學教育의 現況과 展望,” 韓國敎育法研究, 102-122면; 최갑선, “독일법학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과 사회, 12호, 224-247면; Mary Ann Glendon, Michael Wallace Gordon and Christopher Osakwe, *Comparative Legal Tradition, Text, Materials and Cases*, 122-150면 등.
- (6) 美國의 人文·科學教育에 관한 文獻으로 Frederick Stirton Weaver, *Liberal Education: Critical Essays on Professions, Pedagogy, and Structur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91); Phyllis O'Callaghan, ed., *A Clashing of Symbols: Method and Meaning in Liberal Studies* (Washington,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88); L. Robert Stevens, G.L. Seligman, and Julian Long, eds., *The Core and the Canon: A National Debate* (University of North Texas Press, 1993); James L. Ratcliff, ed., *Assessment and Curriculum Reform*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2); Carol Geary Schneider and William Scott Green, eds., *Strengthening the College Major*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3) 등. Gary E. Miller, *The Meaning of General Education: The Emergence of a Curriculum Paradigm*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88)은 지난 세기의 고전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liberal education과 20세기에 등장한 general education과를 구별하여 전자에서는 그 자체가 목적인 데 비하여 후자는 개성의 계발 및 자유스런 민주사회와 같은 바람직한 목표달성의 수단으로서의 교육이라고 한다. 의미있는 구별이라고 생각하나 우리의 목적을 위한 서술로서는 굳이 이 양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양자 모두를 포섭하는 의미로 파악한 liberal arts and science교육을 미국대학 학부교육의 특징이라 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위의 문헌들도 굳이 이 양자를 구별치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우수대학 어느 학교의 학부과정의 학생안내책자 어느 것을 살펴보아도 학교 사이의 강조점이나 표현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인문·과학교육으로서의 학부교육의 성격을 또한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알려진 명문대학이나 전통적인 학부중심대학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또한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대학의 교과과정, 강의실에서의 강조점이나 수업 등 그 행하는 바, 의무적인 기숙사 생활, 심지어 학교에서 지원하는 과외활동 및 체육활동까지 모두 인문·과학교육으로 다져진, 창의적이고 자유스러우며 분석력·비판력을 갖춘, 그러면서 다양성을 포용할 줄 아는 紳士精神(gentlemanship)의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모습으로 인문·과학교육 중심의 학부교육을 성격지음은 전국적인 지명도의 점에서 훨씬 떨어지는 다수의 비명문 지방대학, 야간대학, 전문대학(communitary colleges) 등의 경우에는 잘 맞지 아니한다. 말할 것도 없이 이들 대학의 경우에 그 교육이란 인문·과학교육의 그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실용적·직업중심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 전원의 기숙사 생활이란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다만 미국 대학 학부교육의 일반적인 특징을 들라면 인문·과학교육의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뿐이다.

그렇다면 다음에 제기할 우리의 질문은 소위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인문·과학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부교육이 왜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法이라는 主題는 사람의 知的 成長의 相異한 段階에 맞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주제라고 믿는다. 분명히 法은 대학의 人文教育의 一環으로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 소위 教養法學이라고 부르고 있는 바가 그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 법은 전 세계적으로 학부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주제였으며 아직도 그러하다. 그리하여 학부단계의 법학과정을 통하여 사법시험을 더 요구하기도 하고 혹은 사법시험을 요구함이 없이 매년 수백명 수천명씩의 법률가가 배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 記述에도 일정한 추가설명이 요구되고 있는데, 미국의 法科大學 卒業生(JD)이 졸업 후 博士課程에까지 나아가는 숫자와 비교할 때에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학부단계 법과졸업생이 博士課程(Doktor juris)을 밟고 있으며 박사과정 후에 심지어는 教授資格課程(Habilitation)까지 밟고 있는 사람이 있는 독일의 예가 그것이다. 우리가 아는 한 법학교육이 專門教育이라는 이름으로 大學院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이 전세계 유일의 나라이다.⁽⁷⁾

위에서 이미 암시한 바와 같이, 미국 법학교수 및 실무법률가들만의 설명으로는 미국 법학교육의 특징적 요소인 事例중심의 教育方法(case method)에 의한 專門의인 法學教育

(7) 전문법학교육이 大學院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이 전 세계 유일의 나라라는 생각에 제동을 걸고 근래에 미국모델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이야기를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법과대학의 Richard M. Buxbaum 교수로부터 듣고 University of Melbourne 법과대학의 Cheryl Saunders교수에게 문의편지를 내었다. 비교헌법연구소장이기도 한 Saunders교수의 대답은 오스트레일리아법과대학들은 영국모델 및 미국모델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면서 Melbourne법대의 예를 들어 법학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학부과정이지만 전문대학원과정(가족법, 회사 및 증권법, 분쟁해결 및 사법과정, 재정법, 보건 및 의료법, 보험법, 지적재산권법, 국제법, 노동관계법, 언론매체법, 자연자원법, 국제거래법, 아세아법 등)을 또한 두고 있다고 한다. Melbourne법대 대학원과정 요람(The University of Melbourne Faculty of Law Graduate Studies and Continuing Education 1996) 참조.

이 이보다 앞선 학부교육의 履修 없이는 의미심장하게 수행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100% 확신이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시행한 관찰을 기초로 하여 판단컨대 현재 미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전문법학교육은 미국의 법률가들이 현재 무슨 일을 하는 어떠한 사람들이나 하는 점을 보여주고 결정지워 주는 것(變數)이라고 생각한다. 즉 거만하다고 할 만큼의 自信感, 풍부한 想像力·應用力, 進就性을 갖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수많은 專門法律家의 모습이 그것이다. 학부교육의 이수는 전문교육과정이 대학원 단계에서 이루어질 때 專門家(specialists)의 養成을 수월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학부단계에서의 도서관학교육은 카탈로그를 만드는 기술 등을 갖춘 일반 사서를 양성하기에 적합한 것이지 법률전문사서, 과학전문사서, 의학전문사서 등과 같은 주제별 전문사서를 양성하여 내기에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 믿는다. 마찬가지로 학부과정에서의 법학교육은 一般法律家(generalist lawyers)는 양성해 내겠지만 그들을 主題別 專門法律家로 양성해가는 힘들 것이다. 예컨대 공과대학 졸업생을 학부공학교육에 이은 3년간의 대학원단계의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거쳐 능력있는 특허변호사로 훈련해 내기는 대단히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학부단계의 법학과정을 통하여 같은 능력을 갖춘 특허변호사로 양성해 내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법정제학자, 통상법전문가, 환경법전문가의 예와 같은 수많은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법률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최근에 출범한 WTO體制 및 通商法, 그리고 특히 미국의 수퍼301조는 미국 장사꾼 및 경제인들의 작품이기보다 미국 법률가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 사회에 있어서의 法律家의 量産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하여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법률가의 양산은 법률가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미국내 法律家市場의 創出 및 擴大를 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뛰어 놀 안마당을 뛰어 넘어 國際法律家市場의 創出에 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은 전세계에 걸친 법률서비스시장의 開放을 요구하여 나서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미국 법률가들은 WTO 및 통상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같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미국 법률가像은 약간은 과장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리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 법률가의 자신감, 풍부한 상상력·응용력 및 진취성은 인문교육을 통하여 창의력·분석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들이 받은 학부교육기간 동안에 길러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전문대학원과정의 법학교육을 통하여 더욱 強化되고 있는 것이다. 創意的인 思考, 分析的·批判的인 思考 및 應用力이야말로 美國法學教育의 核心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소위 case method라고 하는 사례 중심의 교육방법은 법과대학생들의 암기력이 아니라 창의력, 분석적·비판적 사고 및 응용력의 培養을 위한 手段으로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사례를 이용하여 법과대학생들로 하여금 “法律家답게 思考”(think like lawyers)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흔히 이야기한다. 그러나 미국의 법학교육은 단지

학생들로 하여금 법률가답게 사고하도록 훈련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 그들이 부딪치는 법률문제가 무엇이든지 그들의 창의력, 분석적·비판적 사고력 및 응용력을 활용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이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있다고 판단된다. 바로 미국 法律家들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水準의 創意力, 分析的·批判的 思考力 및 應用力의 培養을 위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그러한 學部教育이 必要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법률가들이 초창기 미국의 건국 및 헌법의 제정으로부터 오늘날의 산업화 및 기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社會變化 가운데 법률가가 개재되지 아니한 사회변화를 상상해내기는 실제로 그리 쉽지 아니하다고 믿고 있다. 농업경제의 기반 위에 그 사회생활이 비교적 단순하였던 미국 역사의 초창기에는 도제제도와 같은 훨씬 단순한 법률교육방법을 가지고도 그 시대의 사회적 수요 충족에 충분한 능력있는 법률가를 양성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단히 급속하게 변화하는 산업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현대의 법률문제를 능숙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만큼 유능한 법률가를 양성해 내기에는 그러한 제도로는 충분치 아니할 것이다. 우연일지는 몰라도 現在 미국의 專門大學院級 法學教育 模型은 現代 미국 社會의 需要 充足에 적합하게 創案된 것임에 틀림없다.

3.

그렇다면 우리가 제기할 다음 질문은 당연히 다음과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 즉 현재 대학원급에서 시행하는 미국 법학교육에 있어서의 教育方法의 性格은 무엇이나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시행하는 대학에서의 專門法學教育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專門”(professional)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미국 법과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배적인 교육방법은 事例 중심의 對話式 教育方法(case method and Socratic method)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법과대학만이 이 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법학교육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이들 방법이 법과대학 교육에서 채택되고 있는 지배적인 방법이라는 데 있다. 講義나 세미나와 같은 다른 교육방법은 훨씬 덜 활용되고 있으며 활용되더라도 기본과목 이외의 과목에서이고 통상 상급학년을 위한 과목의 경우인 것이 보통이다. 사례 중심의 대화식 방법은 무엇보다도 契約法, 不法行爲法, 財産法, 刑法, 民事訴訟法과 같은 普通法 講義의 基礎가 되는 일학년 基本科目의 경우에 결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본과목을 위한 교과서는 특히 代表的인 事例(判例)의 모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시간짜리 강의실 수업을 위하여 두 시간 정도 숙제로 미리 정해진 사례(판례)를 읽는 연습이 필요하도록 강의실 수업이 짜여진다.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숙제로 내 준 사례로부터 관련된 事實關係를 要約해 내고 이 사실관계에 適用된

또는 適用될 法原則을 찾아내도록 質問을 던지고 答辯을 듣는 對話式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독일 법과대학에서 練習(Übung)과목이 강의식 및 세미나식 과목과 함께 법학교육의 필수과정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흥미롭다. 독일의 연습과목이란 법학교육상 활용되고 있는 事例 중심 教育方式의 獨逸型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법과대학생들이 사례를 단순히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사례로부터 어떠한 事實關係에 어떠한 法原則이 適用되어야 하는지를 判別해 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다양한 법률문제를 다룸에 있어서의 分析力·應用力을 갖추도록 訓練해 내려는 것이라고 하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즉 학생들로 하여금 分析力·應用力을 갖추도록 하려는 目標의 達成을 위하여 事例 중심 教育方式을 活用하는 것 뿐이다. 교과서는 서로 관련된 先決事例 그것도 上級法院의 대표적 先決事例의 모음집이다. 나아가 교과서에는 대표적인 선결사례만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록한 선결사례 앞이나 뒤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질문들도 실고 있으며 관계 중요 저서나 논문 및 제정법으로부터 발췌한 것도 또한 실고 있다. 오늘날의 교과서 가운데에는 과목에 따라 선결사례보다도 중요 저서나 법학논문 및 비법학적인 사회과학논문의 발췌와 법조문들을 더 많이 수록한 것들도 많다. 이러한 점은 경제 규제법, 협상 및 조정, 통상법, 환경법 및 입법학과 같은 과목의 경우에는 더욱이 그러하다. 이렇게 선결사례를 다룰 줄 알 뿐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법영역까지도 자신감을 가지고 다룰 줄 아는 능력을 갖추도록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사례 중심의 대화식 방법을 가지고 행하는 이같은 법학교육이 한편으로는 대학원교육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 “전문적”인 교육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제기하고자 하는 다음 차례의 질문이다. 이 질문은 실무법률가 뿐만 아니라 법학교수까지도 그들이 법과대학 졸업과 함께 받는 法學士學位(JD 혹은 LL.B.) 이상의 이클레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더 밟는 일이 없이 꼭 같은 법과대학의 법학교육과정을 거쳐 양성되는 까닭에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질문이다.⁽⁸⁾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례 중심 대화식 교육 방식의 이같은 법학교육을 통하여 다져진 분석력·응용력은 법학교수나 실무법률가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분모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의 관찰에 의하면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미국의 법학교육은 단순화해서 분석력·응용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소위 “法律家답게 思考”할 줄 아는 能力의 培養을 뛰어 넘어 學問的(academic) 訓練의 요소 및 實務的 또는 實際的(practical) 訓練의 요소 양자를 모두 강력하게 지니고

(8) 물론 법과대학교수 가운데는 교수 임명을 받기 전에 연방대법관과 같은 저명 판사의 裁判研究官(law clerk) 경력을 쌓는다는지 이클레멘 경제학 분야와 같은 다른 분야의 博士(Ph.D.) 과정을 밟는다고 함과 같이 JD 말고도 훈련을 더 받거나 발표된 논문등 著述을 이미 가지고 있는 법학교수의 숫자가 점차 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인 것은 사실이다. 현지 조사 때 만난 North 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학장의 언명에 의하면 JD 이외에 Ph.D.를 가지고 있는 교수의 숫자가 전체교수 가운데 30%는 되리라고 한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學問的 訓練 및 實務的·實際的 訓練 각각의 構成比는 특정 법과대학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Harvard나 Yale이나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나 University of Michigan이나 Stanford나 North Western University나 하는 全國的(national)으로 알려진 名門 法科大學의 경우에는 학문적 훈련의 요소가 대단히 강하고 地域的인 혹은 地方(local)의 法科大學의 경우에는 그 법학교육에 있어서 실무적 또는 당장의 취직과 같은 실제적 훈련에 좀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⁹⁾ 소위 명문 법과대학의 교수들에게 물어 보면 자기네 학교는 研究 중심의 大學이라고 서슴없이 대답한다. 교수임명, 교수승진, 교수의 봉급수준 등 모두가 논문발표 등 연구업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훌륭한 연구가가 반드시 훌륭한 교육자가 되는 것은 아닐 터인데). 지방의 법과대학에서조차도 교수의 평가에 있어서 논문발표 등 저술활동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명문 법과대학 만큼은 아니며, 그들 학교의 인턴 프로그램과 같은 실무적 또는 실제적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교수와 같은 경우에는 논문발표 이외의 평가기준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 법과대학, 야간 법과대학 등의 경우에는 훌륭한 학자보다 훌륭한 교육자를 더 알아주는 경향이 있다.

물론 전국적인 법과대학의 경우에도 그들 학교 교과과정 중에 실무적 또는 실제적 훈련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교과과정에는 法律文章論(legal writings), 인턴 프로그램(intern programs)과 같은 실무적 또는 실제적 훈련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 있다. 다만 그 강조점은 학교마다 다르다. 인턴 프로그램은 선택 과목인 경우가 보통이며 또 실무법률가가 시간제로 그 과목을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방의 법과대학에서는 인턴 프로그램이 폭넓게 개설되어 있으며 필수과정인 경우도 많고 인턴 프로그램을 담당케 하기 위하여 전임교수를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Boston에 있는 Northea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9) 美國에 있어서 全國的(national)인 법과대학이나 地方的(local)인 법과대학이나의 구분의 문제는, 첫째로는 그 법학교육·연구에 있어서 學問的·理論的인 접근 또는 경향이 두드러지느냐 實務的·實際的인 접근 또는 경향이 두드러지느냐의 문제이지만, 둘째로는 미국의 全國的인 法(national law)을 가르치느냐 地方法(local law)을 가르치느냐의 차원의 문제도 지니고 있다. 미국은 연방 국가로서 50개 州마다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통일적인 법이라는 의미의 전국적인 법(national law)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전국적인 법,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법이 있는 듯이 이러한 법을 가르치는 법과대학이 있고 법과대학이 위치한 州의 법을 중심으로하여 법학을 가르치는 법과대학이 있는데 전자가 전국적인 법과대학이고 후자가 지방적인 법과대학인 것이다. 이와 나란히 하여 셋째로는 전국적인 법과대학의 졸업생들은 全國 어디에나 進出하여 법률가로서 활약하나 지방 법과대학 졸업생들은 自己 地域에서 활약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법과대학으로서의 전국 어디에서나 활약할 법률가를 양성하느냐 주로 그 지역에서 활약할 법률가를 양성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넷째로는 젊은 법률가를 채용함에 있어서 大都市의 로펌이나 聯邦政府機關의 경우에 대개 그러하듯이 단연 全國的인 法科大學의 卒業生을 選好하는 기관들이 도처에 있어서 역으로 이러한 고용 내지 채용 관행이 전국적인 법과대학으로 하여금 그 쪽 方向으로 나아가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인 법과대학과 지방적인 법과대학의 구분 내지 본포가 2次函數的(linear)인 것이라기 보다는 兩極化(bipolar)된 모습의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의 경우에는 인턴 프로그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협동과정”(cooperative program)이 필수과정으로 설치되어 있다.⁽¹⁰⁾ 학교의 알선에 따라 학생은 일년 동안 학교를 떠나 로펌이나 기업체에서 전임 봉급을 받으면서 일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관련 3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동한다. 즉 학생은 장래를 위한 실무를 익히면서 교육비를 스스로 벌 수 있고, 로펌이나 기업체는 장차 직원으로 쓸 수 있을지를 시험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학교로서는 특히 스스로 자기 학비를 벌지 아니하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는 이미 제기한 바 있는 “專門的”(professional)이란 무슨 의미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여야 할 차례에 와 있다. “專門的”이란 것의 의미는 미국의 법학교육이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의 대학원 과정의 하나로써 시행되는 “專門”教育의 이름 밑에 學問的 및 實務的 또는 實際的 要素 兩者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파악키 어려워 보인다. 전문교육은, 특히 전문교육의 실무 내지 실제교육적 요소는 실무교육(practical training)이나 장사기법의 전수(teaching in trades)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이 대학과정의 하나로 설치되어 있으며 따라서 학문적 훈련의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이유 때문만으로 다르다(그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인가? 그 대답은 필경 “professional”의 명사형인 “profession”(專門職)의 概念⁽¹¹⁾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專門職은 필경 이 개념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장사(trade)나 사업(business)과 구별된다고 생각된다. (1) 醫師 등 醫療職의 경우의 公共의 健康, 法曹職의 경우의 法과 正義의 예와 같이, 전문직은 대단히 강한 公共의 利益이라는 요인을 그 개념 속에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로 公共의 安寧이 크게 전문직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란 단순히 사적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장사나 사업일 수 없다. 그러한 만큼 (2) 共同體(the community)가 전문직의 교육, 자격증의 부여, 징계의 문제 등에 있어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직의 질을 높이고 그들의 업무를 청렴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 대한 統制의 問題에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국가가 자격증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징계문제에 관여한다. 미국에서는 자발적 단체인 변호사회가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러한 권한을 행사한다. 미전

(10) Northeastern University의 cooperative program에 관하여 Northeastern University, vol.19, No.3 (September of 1991 issue, *College Studies and Cooperative Education: An Education That Works, The Northeastern Advantage*) 참조.

(11) 專門職(profession)의 概念에 관하여 Talcott Parsons, “Professions,”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Talcott Parsons, “Professions and Social Structure” and “A Sociologist Look at the Legal Profession,” in Talcott Parsons, *Essays in Sociological Theory*, rev. ed., (New York: Free Press, 1954); Andrew Abbott, *The System of Professions: An Essay on the Division of Expert Lab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Eliot Freidson, *Professionalism Reborn: Theory, Prophecy and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참조.

국변호사협회(ABA)가 그 인증(accreditation)프로그램을 통하여 법학교육의 질을 높게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현상으로서 (3) 전문직의 職業倫理(professional ethics and responsibilities)는 특히 강조되고 있다. 사실 직업윤리는 전문직(개념)의 불가분의 요소이다. 직업윤리는 “高邁한 專門職種”이라는 주장에 걸맞게 자기 전문직을 사회 안에 높게 유지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강한 직업윤리의 요소를 빼고 나면 전문직은 험사리 장사나 사업이 되어 버린다. 미국의 법과대학에서는 직업윤리과목이 설치되어 있다.⁽¹²⁾ 그리고 직업윤리는 많은 州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법시험과목이기도 하다.⁽¹³⁾ 그러한 만큼 미국의 전문적인 법학교육이란 비록 실무교육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장사나 사업 기법의 전수교육이라 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의 법학교육이 대단히 강한 學問的 訓練의 要素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 법과대학의 학문적 훈련의 요소는 實務法律家(판사, 검사, 기업체변호사, 로펌의 파트너, 공식 로비스트, 입법자문위원, 미국 사회 및 세계의 중요한 일에 관여하는 정치가인 변호사까지 포함하는 실무법률가)뿐만 아니라 法律學者·法學教授들로도 구성되어 있는 全體 專門法律職의 모습에 相應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법률학자·법학교수가 法科大學에서 뿐만 아니라 美國法の 發達에 있어서, 專門法律職 내에서도, 美國 社會에서도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도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미국의 법학교육은 미국의 법조인이 미국 사회에서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이 부딪치는 다양한 需要와 挑戰에 應할 수 있기에 적합하게 設計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大學院 段階에서의 法學教育을 正當化하는 또 하나의 根據를 提示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도 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現 체제의 高等學校를 졸업하는 단계에서의 知的 水準이나 經驗에 비추어 장차 자기가 무엇을 專攻할 것인지 무엇을 職業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뚜렷한 결심이나 목표없이 대학 학부를 진학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고 그리하여 大學學部 履修課程에서 비로소 장차의 進路나 目標가 뚜렷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또 대학학부 입학 단계에서 설사 그 생각이 비교적 뚜렷하더라도 대학학부 이수 과정에서 그것이 바뀌는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만큼 법과대학 등 대학원

(12) Professional responsibility이라는 이름의 과목에서 전국 수준(ABA)의 또는 각 주의 변호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윤리장정 중심의 대단히 자세한 직업윤리 원칙 및 규칙 등을 가르친다. 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lawyering이라는 이름의 과목에서 법률문장론, 변론론 등과 함께 직업윤리를 가르치는 곳(예컨대 Harvard)도 많다.

(13) 미국에서는 주마다 별개의 사법시험이 있는데 50개주 가운데 대략 3분의 1에 해당하는 주에서 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MPRE)이라는 이름의 선다형의 직업윤리과목 시험을 보이고 있다. 전계 *Legal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An Educational Continuum, Report of The Task Force on Law Schools and the Profession : Narrowing the Gap*, 283면 참조.

과정의 전문교육 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將次의 자기 專攻이나 職業에 관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2의 機會(the second chance)를 제공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그것도 지적 성장에 있어서나 경험의 축적에 있어서 좀 더 成熟한 判斷을 내리게 하는 機會를 주는 것이 된다. 위에서 본 法律家와 같은 專門職 從事者가 되려는 決定을 지적 수준이나 성숙도에 있어서 아직도 未熟한 現在의 高等學校 卒業段階에서 하게 하는 것보다는 知的 水準이나 經驗이 좀 더 成熟한 大學學部 卒業段階에서 행하게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動機 附與에 있어서나 知的 成長에 있어서 소위 철이 늦게 드는 학생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혹은 經濟的 能力 때문에(미국의 일류대학, 특히 사립명문대학의 학비는 대단히 비싼 것이 보통이다) 소위 일류명문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만큼 법과대학과 같은 대학원급 전문교육 과정은 소위 철이 늦게 든 非名門大學의 上位級 卒業生들이나 졸업 후 취업을 통해서 학자금을 마련하거나 학비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그러면서 자질은 뛰어난 非名門大學 卒業生들에게 名門 法科大學등에 進學할 수 있는 機會를 주는 制度가 된다. 이를테면 대학학부 단계부터 따질 때 대학원급 법과대학 체제는 미국 社會의 文脈에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身分 上昇의 機會를 提供하는 裝置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번의 선택으로 일생이 결정되는 체제보다는 두 번의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제는 그 만큼 더 열린(open) 社會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만큼 미국의 법과대학, 미국의 법학교육은 결국 미국 社會의 한 反映이랄까 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¹⁴⁾

(14) 지난 여름 우리가 방문하였던 Bunker Hill Community College에서 본 바에 의하면, 미국의 2년제 전문대학(communitary college)에서는 당장의 취업에 쓰일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과 장차 4년제 정규대학에 진학할 학생을 교육·훈련시키는 과정의 2개 과정을 두어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도 그 패턴에 있어서는 이 곳에서 설명한 법과대학(원)의 생각과 평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자기 개발의 다양한 단계와 다양한 유형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제로 미국 사회가 구성·조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Professional Legal Education in the US

CHOI, Dai-Kwon*

This paper is designed to analyze American legal education to gain possible insight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Our inquiries include how you justify the graduate level legal education, why not an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etc. These inquiries may not be thought-provoking for Americans but for Korean law professors who are seriously looking for a legal education model suitable for Korea. As a matter of fact, Korean legal education is presently an undergraduate level enterprise. The present Korean legal education has long been thought unsatisfactory both academically and professionally. The inquiries raised are derived naturally from our needs to learn from the American experience in legal education.

The answers to the inquiries which we acquired from American law professors, school administrators, and law practitioners in interviews basically boil down to the following two themes : ① the tradition, in other words, that is the way it has been, and ② the college graduates have the better ability to have professional legal education particularly in terms of analytic and creative mind and maturity. The explanation with the tradition obviously does not carry a weight for us Koreans who are looking for justifications for the graduate level legal education. Instead we believe that the second answer has a kernel of truth in it, although it would be hard to prove it with a hard evidence. We believe that law can be taught at a various level of one's intellectual development. A country's level of legal education has more to do with the roles which their lawyers are playing or expected to play in society and in the world affairs. Probably it is true that the kind of legal education that is to prepare aspiring young Americans adequately to fulfill the expectations placed upon them when they become lawyers cannot be satisfactorily conducted at an undergraduate level.

The American model of legal education is very much an invention of American society.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③ The American graduate level legal education gives a second chance to move upward in social hierarchy to those students who are the top students of the less prestigious undergraduate schools that are the intellectual late bloomers or that initially were not able to attend the prestigious undergraduate schools because of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To that extent American society is more an open society.